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381
------------	------

2018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13일, 김창원 의원 외 24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8년 2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5항 신설).

- 시민의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중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20 ~ 2018. 2. 26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원안동의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횡단보도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기본책무)는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서울 시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 자료<sup>1)</sup>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중 사망자 1,714명 중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를 런던과 베를린과 같은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줄이고자<sup>2)</sup> 노력하고 있음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16년 보행사망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1,714	200	85	82	68	44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9	31	10	325	68	74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	107	105	168	139	39

2)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2017.4.13.)

- 10만 명 당 교통사고사망자 : 서울 3.7명, 전국 평균 9.1명('15년) OECD평균 5.3명, 베를린 1.4명, 런던 1.5명, 뉴욕 2.9명('14년)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수립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관한 사항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 ■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주의 권고 규정 신설(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의 사용에 주의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sup>3)</sup>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50% 감소시키고 전방주시율은 15%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어다는 사람을 빗댄 ‘스몐비’<sup>4)</sup>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sup>5)</sup>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 이수일·김태호(2016),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각 인지특성 연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4) 스몐비(Smombie) = 스마트폰(Smart phone) + 좀비(Zombie)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6.12 - 상정일 : '17.11.23 - 상정 결과 : 소위원회 회부

- 주요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검토의견 : 보행자의 주의가 분산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가지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서울시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  
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  
의해야 한다.